## 「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」 개정요약서

## 1. 행정규칙명

○ 「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고시 제2023-6호 '23.01.20.)

## 2. 개정사유

○ WCO 제70차, 제71차 및 제72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"HS 품목분류의견서" 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

## 3. 주요 개정내용

- ① HS 품목분류의견서(WCO 제70차 HS위원회 결정)
- 허브기침 태블릿(제1704호), 테이프 조명(제8539호) 등 12개 품목
- ② HS 품목분류의견서(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)
- 재가수된 대구필레(제0304호), 장식용의 세라믹 얇은 단판의 벽돌 (제6907호), 상호작용 회의 단말기(제8471호) 등 23개 품목
- ③ HS 품목분류의견서(WCO 제72차 HS위원회 결정)
- 스마트폰/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(제7007.19호), 손목에 착용하는 러닝워치(제9102호) 등 21개 품목
- **4. 개정안 및 개정전문**: "붙임"
- 5. 규제대상 여부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- 6. 시행일자: 2024. 4. 11.